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공개조례 개선방안 연구

연구 | 황진현, 김유승, 김조은
사업지원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공개조례 개선방안 연구

황진현, 김유승,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5. 10.

사업지원 : (재)바보의나눔

목 차

1. 시작하는 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6
2. 사례연구: 미국 회의공개법	8
3. 회의공개 관련 조례 개요	10
4. 회의공개 관련 조례 분석의 준거	14
5. 회의공개 관련 조례 분석: 기초자치단체	15
5.1. 회의 공개	15
5.1.1. 회의공개 원칙 명시 여부	15
5.1.2. 회의 방청 규정	15
5.1.3. 회의 사전 고지 규정 분석	17
5.1.4. 회의 사전 고지 기간 분석	19
5.1.5. 회의 사전 고지 예외 유형 및 규정 내용	20
5.2. 회의록 공개	21
5.2.1. 현황	21
5.2.2. 회의록 공개 기간 분석	21
5.2.3. 회의록 공개방법 유형 구분	23
5.2.4. 회의록 비공개 근거 유형	23
5.2.5. 회의록 작성의 구성 요소	26
5.3. 위원 명단 공개	26
5.3.1. 현황	26
5.3.2. 위원 명단 공개 방법	27
5.3.3.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	28
6. 회의공개 관련 조례 분석: 광역자치단체	29
6.1. 회의 공개	30

6.1.1. 회의공개 원칙 명시 여부	30
6.1.2. 회의 방청 규정	30
6.1.3. 회의 사전 고지 규정 분석	30
6.1.4. 회의 사전 고지 기간 분석	30
6.1.5. 회의 사전 고지 예외 유형 및 규정 내용	31
6.2. 회의록 공개	31
6.2.1. 현황	31
6.2.2. 회의록 공개 기간 분석	32
6.2.3. 회의록 공개방법 유형 구분	32
6.2.4. 회의록 비공개 근거 유형	33
6.3. 위원 명단 공개	34
6.3.1. 현황	34
6.3.2. 위원 명단 공개 방법	35
6.3.3.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	35
7. 회의공개 조례(안)	36

<표 1> 미국 정보공개법 및 회의공개법	6
<표 2> 분석 대상 조례 명칭	10
<표 3> 분석 대상 조례 중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연도	12
<표 4> 분석 대상 조례 중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연도	12
<표 5> 조례 분석 준거	14
<표 6> 회의 방청 규정 사례	16
<표 7> 고지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회의 사전 고지 규정 사례	17
<표 8> 회의 사전 고지 규정 사례	18
<표 9> 회의 사전 고지 기간 유형	19
<표 10> 회의 사전 고지 예외 유형	20
<표 11> 회의록 공개 기간 유형	22
<표 12> 회의록 공개방법 유형	23
<표 13> 회의록 비공개 근거 유형	23
<표 14> 회의록 표준 구성 요소	26
<표 15> 위원 명단 공개 방법 유형	27
<표 16> 광역자치단체 회의공개 관련 조례 목록	29
<표 17>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사전 고지 기간	31
<표 18>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 사전 고지 예외 유형	31
<표 19>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공개 기간 유형	32
<표 20>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공개방법 유형	32
<표 21>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비공개 근거 유형	33
<표 22>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공개 세부 내용	34
<표 23>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위원 명단 공개	35
<표 24> 회의공개 조례(안)	37

1. 시작하는 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5조는 시민공동체에게 “모든 공직자로부터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음
- 모든 사람들은 정부가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누구에 의해 공적 결정이 만들어지는지 알권리를 가지며,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Judy Nadler and Miriam Schulman. 2006. Open Meetings, Open Records, and Transparency in Government. <<https://www.scu.edu/ethics/focus-areas/government-ethics/resources/what-is-government-ethics/open-meetings-open-records-transparency-government/>>

- 정부의 행정적, 정책적 결정을 비밀의 영역에 두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용인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며, 민주적 행정 구현의 정신에 반함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공개 제도화 연구. 기록학연구, 17: 203-245
- 시민이 정부에 의미 있게 참여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조치가 왜 취해지는지 이해하려면, 의사 결정 과정과 최종 결과 모두 시민이 완전히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함

Oklahoma Ass'n of Municipal Attorneys v. State, 1978

- 미국의 경우, 정부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부 업무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회의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등의 법률이 있음 (<표 1> 참조)

<표 1> 미국 정보공개법 및 회의공개법

	U.S.Code	Short Title
5 U.S.C.	§ 552. Public information: agency rules, opinions, orders, records, and proceedings	Freedom of Information Act
	§ 552a. Records maintained on individuals	Privacy Act
	§ 552b. Open meetings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보 공개법령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Sunshine Act라고 불리는 회의공개법의 유무임

- 회의의 공개가 아닌 회의록의 공개, 공개가 아닌 원활한 생산과 보호에 법령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미국의 회의공개법은 “회의 자체의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벌칙 및 회의록 작성, 관리,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최경민, 김유승. 2018. 미국 50개주 회의공개법 연구. 기록학연구, 57, 35-73

-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14번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의 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공개,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 정보 공개 확대,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 지정, 열람, 공개 서비스 개선 등이 제시됨

대한민국 정부. 2025. 9.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fcatalog/ecatalog5.jsp?Dir=1193&fileId=145657137>>

- 2025년 7월 29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었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비밀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관료주의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으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였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5.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생중계 환영한다. <<https://cfoi.or.kr/18445>>

- 최근 들어, 회의공개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들이 다수 제정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회의 공개에 매우 소극적임. 회의 공개는 커녕 회의를 열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의 강제성이 부족한 실정임. 경기도의 경우, 도내 절반 가까이의 위원회가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으며, 회의록 공개 의무가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게시하거나 공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경기일보(2025.7.11.) ‘회의록 공개’ 조례 유명무실…경기도 위원회 투명성 도마 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0580351>

- 이에 본 연구는 미국 회의공개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의공개 관련 조례 206개의 내용 분석하여, 회의공개를 위한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사례연구: 미국 회의공개법

- 미국 연방정부는 <회의공개법>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연방정부 기관들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적용을 받는 협의회, 위원회 등이 50여 개에 달함
- 미국 50개 주도 각각의 회의공개법을 제정하고 있음. 명칭은 Open Meeting Act, Sunshine Law, Open Door Law, Public Meeting Law, Open and Public Meeting Act, Open Governmental Proccedings Act 등 다양함
- 일반적으로 회의공개법은 회의공개의 목적, 공개회의의 정의, 적용받는 기관의 범주, 회의 공지 및 통지, 회의록과 투표를 포함한 회의 절차, 결과공개, 비공개 및 절차 등의 집행,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공개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를 허용함.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 회의록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함
- 회의공개에 대한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는 미국 회의공개법의 핵심적 시사점은 회의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다는 점과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벌칙을 명시하였다는 것임
- 첫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임
 - 소송을 통해 회의공개법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불법적으로 개최된 회의를 통해 결정된 모든 행위 및 조치는 무효화되는 것이 원칙임
 - 단, 법원이 회의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 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의 가장 중요되는 기준은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임
- 둘째, 누구든 회의공개법 위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회의공개법 위반이 발생 또는 인지된 경우, 누구나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단, 소송은 위법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또는 위법 회의를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 다만, 소송 중이라도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 소송은 기각이 됨
-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법에 따른 회의 개최의 공지가 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회의의 장에게 위반을 통지하고, 회의를 취소시킬 수 있음
 - 회의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리를 열어야 함
- 넷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벌금 부과 및 경범죄 처벌부터 징역형까지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다섯째, 정보공개위원회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처분권 가짐
 - 정보공개위원회 또는 회의공개위원회는 회의공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한 회의에 따른 결정과 조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다만, 정보공개위원회 또는 회의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3. 회의공개 관련 조례 개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해 확인한 자치단체의 회의공개 관련 조례 206개를 분석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조례 중,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188개, 광역자치단체조례가 18개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개 중 회의공개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 42곳을 제외하고, 184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188개를 분석함 (경기도 구리시, 안성시, 용인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각각 2개씩의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음)
- 분석 대상 광역자치단체 17곳이나, 경기도가 관련 조례 2개를 제정하여, 총 분석 대상 조례는 18개임
- 분석 대상 조례의 명칭은 <표 2>와 같음. 분석대상 26개 중 명칭에 회의 공개를 명시한 조례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유일함
- 기초자치단체 조례 중 10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중 1개를 포함하여 11개의 조례가 ‘회의록 공개’를 조례명에 명시하고 있음
- 다수의 조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명칭으로 하고 있음. 다만, 이들 다수의 조례들은 조례명에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위원회의 공개와 비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표 2> 분석 대상 조례 명칭

자치단체 유형	조례 명칭	조례 수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	10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운영 조례	68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10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회의/회의록 공개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7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한 조례들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 회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의 목적문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한 조례들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의 목적문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한편,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중심으로 한 조례들은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목적문을 제시하고 있음
- 분석대상 조례 목적문에 나타난 상위 빈도의 키워드는 위원회, 운영, 투명성, 효율성, 설치, 민주성, 참여, 구성, 시민, 알권리 등임. 이를 바탕으로, 분석대상 조례 목적문의 핵심 주제는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그리고 ‘알권리 보장’으로 도출됨
- 분석대상 조례를 제정연도 기준으로 분석하면 〈표 3〉 〈표 4〉와 같음. 〈표 3〉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표 4〉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연도를 각각 분석한 내용임

〈표 3〉 분석 대상 조례 중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연도

조례 제정 연도	제정 조례 수	조례 제정 연도	제정 조례 수
2006	1	2017	9
2008	10	2018	1
2009	13	2019	22
2010	4	2020	19
2011	12	2021	16
2012	12	2022	12
2013	8	2023	20
2014	5	2024	8
2015	6	2025	3
2016	5	조례명 변경* / 불명**	2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경우, 2006년 제정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2022년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명으로 변경되었음

**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2001년 전부개정되었음이 확인되나, 제정연도는 확인되고 있지 않음

〈표 4〉 분석 대상 조례 중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연도

조례 제정 연도	제정 조례 수	조례 제정 연도	제정 조례 수
1999	1	2015	4
2006	1	2016	1
2007	1	2018	1
2011	1	2019	1
2012	3	2020	2
2013	2		

- 전체 분석 대상 조례 중 가장 먼저 제정된 조례는 1999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6년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최초임

- 광역자치단체의 분석 대상 조례의 제정 연도가 199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188 개 중 100개(53%)가 제정됨

4. 회의공개 관련 조례 분석의 준거

- 회의공개를 위한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 대상 조례의 내용을 ‘회의 공개’, ‘회의록 공개’, ‘명단 공개’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회의 공개’ 관련 내용은 공개원칙, 방청 가능, 비공개 근거, 타법준용, 회의 사전고지, 사전 고지 기간, 사전고지 예외 사유 등을 준거로 분석함
- ‘회의록 공개’ 관련 내용은 공개원칙, 공개시기, 공개기한, 공개방법, 비공개사유, 타법준용 등을 준거로 분석함
- ‘위원회 명단 공개’ 관련 내용은 공개원칙, 공개시기, 공개방법, 비공개사유 등을 준거로 분석함
- 이상의 분석 준거를 정리하면 〈표 5〉와 같음

〈표 5〉 조례 분석 준거

영역	분석 내용
회의 공개	공개원칙, 방청 가능, 비공개사유, 타법준용, 회의 사전고지, 사전 고지 기간, 사전고지 예외 사유
회의록 공개	공개원칙, 공개시기, 공개기한, 공개방법, 비공개사유, 타법준용
위원회 명단 공개	공개원칙, 공개시기, 공개방법, 비공개사유

- 분석에 활용한 기초 데이터는 구글드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Gl0pzopSM3_eycc_AJ1FoYQCAZc88oL7wu_1JjXxZt0/edit?usp=sharing

5. 회의공개 관련 조례 분석: 기초자치단체

5.1. 회의 공개

5.1.1. 회의공개 원칙 명시 여부

- 분석 대상 188개 조례 중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한 조례가 147개(78%), 회의결과 공개 원칙만 명시한 곳이 4개, 나머지 37개 조례는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지 않음
- 대부분 회의 공개 원칙의 규정문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임. 다만, 모든 조례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음
- 특이한 점은 분석 대상 중 4개의 조례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 대신, “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임
-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도 조례 전반에서 ‘회의’, ‘회의록’, ‘회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용어들의 범주와 개념이 혼동되고 있음

5.1.2. 회의 방청 규정

- 방청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단 7개뿐임. 분석 대상 188개 조례 중 3.7%에 해당함.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한 조례가 147개(7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7개(3.7%)라는 것은 회의 공개 원칙 명시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에 규정된 회의 공개를 회의록 공개 또는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이해하고 있음으로 해석됨
- 그나마의 방청 규정도 허가제로 운영됨. 위원회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음.
- 7개 조례 모두 허가의 주체는 위원장으로 허가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음. 위원장의 자의적 판단으로도 방청을 불허할 수 있음

-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방청석 표시, 회의장 질서유지, 회의자료 방청인 열람 등을 명시한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음

〈표 6〉 회의 방청 규정 사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회의의 공개) ②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⑥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회의의 공개) ②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회의의 공개 등)

②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 별도의 방청석을 설치하고, "방청석"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회의를 방청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될 때는 당해 회의에 배부되는 회의자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정보공개 대상은 제외)를 방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청석에 비치하여야 한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③ 위원회 회의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원회의 회의운영) ③ 위원회 회의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회의의 공개) ②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5.1.3. 회의 사전 고지 규정 분석

- 분석 대상 188개 조례 중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한 조례가 147개(78%)인 것에 비교해, 회의 사전 고지 규정만 가지고 있는 조례는 154개(82%)로 더 많음.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채, 회의 사전 고지 규정만 가지고 있는 조례가 7개인 셈임
- 하지만 대부분 조례의 사전 고지 규정은 시민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님. 138개 조례의 사전 고지 조항은 위원만을 대상으로 함
- 4개 조례는 사전고지 대상을 위원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전고지 대상이 모호한 상태임 (<표 7> 참조). 다만, 맥락상 고지 대상이 위원인 것으로 읽힘. 이 4개 조례까지를 위원만을 위한 사전고지 규정으로 포함시키면, 분석 대상 188개 조례 중 75.5%에 달하는 142개 조례가 시민에 대한 위원회 개최 통보 규정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임

<표 7> 고지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회의 사전 고지 규정 사례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

- 회의의 사전 고지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154개의 조례 중 12개 조례만이 위원에 대한 사전 고지와 함께,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회의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위원에 대한 사전 고지 기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반면, 홈페이지 공개 일시 및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위원에 대한 고지와 동일한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일부 조례 규정들은 회의 개최 전에 적용되는 것인지, 회의 개최 후의 결과 공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조차 모호함(〈표 8〉 참조)

〈표 8〉 회의 사전 고지 규정 사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 개최 예정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회의의 고지)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및 안건을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는 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회의의 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회의의 고지 등)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5.1.4. 회의 사전 고지 기간 분석

- 회의 사전 고지 규정만 가지고 있는 조례는 154개 모두 위원회 개최 일시와 안건 배부 일정 등의 ‘사전고지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154개 조례 중 137개 조례(73%)가 회의 사전 고지 기간을 “7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회의자료 배부 기간은 “5일 전까지 고지”와 “7일 전까지의 고지”에 각각 나타난 “3일 전까지”가 75개 조례로 가장 많음

〈표 9〉 회의 사전 고지 기간 유형

사전 고지 기간 유형	조례 수
3일 전까지 고지	2
3일 전까지 고지 – 1일 전까지 회의자료 배부	1
5일 전까지	7
5일 전까지 고지 – 2일 전까지 회의자료 배부	5
5일 전까지 고지 – 3일 전까지 회의자료 배부	2
7일 전까지 고지	61
7일 전까지 – 긴급회의 개최 시 2일전 까지 고지	2
7일 전까지 고지 – 3일 전까지 회의자료 배부	73
7일 전까지 고지 – 4일 전까지 회의자료 배부	1
합계	154 (100%)

- 분석 대상 188개 조례 중 154개 조례가 고지 대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회의 사전 고지 방법과 기간을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34개 조례(18%)는 그나마의 회의 사전 고지 규정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함

5.1.5. 회의 사전 고지 예외 유형 및 규정 내용

- 회의 사전 고지 예외 규정은 다음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7가지 유형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C 유형)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회의 사전 고지 예외 규정들은 자의적 비공개가 위험이 상존함
- 또한, 사전 고지를 하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사후 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표 10〉 회의 사전 고지 예외 유형

유형	규정
A 긴급사유(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B 공익 침해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C 타법령 및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D 부분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E 위원 1/3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F 기관장/위원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이 요구할 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경미한 사안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회의 내용 및 심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G 비밀회의내용 + 긴급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

- A 유형의 “긴급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 B 유형의 “공익침해 우려”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공익침해의 유형과 범주가 무엇인지 규정이 없음.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위 법률의 준용 등 보완이 필요함
- E 유형과 같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회의 사전 고지 예외로 둘 경우, 과반의 찬성에 의한 결정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적 논의체의 운영방식에 벗어나며, 소수 위원들 간의 담합에 의한 위원회 운영의 농단을 방지할 수 없음
- F 유형은 기관장 또는 위원장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며, 거버넌스 협의체인 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반함
- G 유형은 회의 내용이 비밀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한 상위법의 근거 없이 비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범주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5.2. 회의록 공개

5.2.1. 현황

- 188개 조례 중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조례가 118개(63%), 나머지 70개 조례는 회의록 공개 규정이 없음. 이는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한 조례 147개(78%)보다 적은 수임.
- 분석 대상 188개의 조례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70개(37%)의 조례가 회의록 공개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임

5.2.2. 회의록 공개 기간 분석

-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조례 118개 중 공개 기간을 ‘미지정’한 조례가 45개 (38%)에 달함
- 지정된 기간으로는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가 21개(18%) 조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가 20개(17%) 조례로 나타남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회의록 공개 기간을 정보공개청구 시의 공개 기일 보다 규정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부터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한 조례가 118개 중 39개 (33%)에 달함
- 심지어, 경기도 파주시의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명단, 회의결과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 일정을 연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음

〈표 11〉 회의록 공개 기간 유형

회의록 공개 기간 유형	조례 수
연초 공개	1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12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10일 이상 공개)	1 13 (11%)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	6
회의 종료 후 10일 경과한 날부터 공개가능 (1회 10일 기간 연장 가능)	14 20 (17%)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	8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 (1회 10일 이내 공개기간 연장 가능)	4 13 (11%)
회의종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1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	1
회의종료 후 20일 이내	4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15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	4 21 (18%)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 (1회 10일 이내 공개기간 연장 가능)	2
기간 미지정	45 (38%)
합계	118 (100%)

5.2.3. 회의록 공개방법 유형 구분

-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118개 조례 중 회의록 공개방법을 명시한 조례가 109개 (92.4%)임. 나머지 9개 조례는 회의록 공개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공개방법은 언급하지 않음
- 이중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방법을 채택한 조례가 69개로 58.4%를 차지함. 다만, 이중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를 명시한 조례는 단 4개뿐임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더구나 시의회, 구의회의 요구 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한 조례가 118개 중 40개로 34%를 차지함. 만약 공개요구 또는 청구가 없다면, 공개도 없는 상황임

〈표 12〉 회의록 공개방법 유형

	(시구)의회요구/청구	8	
공개요구/청구	공개요구	1	40 (34%)
	청구	31	
홈페이지	홈페이지	61	109 (92.4%)
	홈페이지(상시)	4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1	69 (58.4%)
	홈페이지/청구	3	
미지정			9 (7.6%)
	합계		118 (100%)

5.2.4. 회의록 비공개 근거 유형

- 118개 조례의 회의록 비공개 근거 조항을 24가지 유형(A-Z형)으로 추출하고, 이를 유사 내용으로 묶어 다시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을 제시한 A유형과 타법 및 조례를 제시한 D유형을 제외한 모든 비공개 근거 유형은 자의적 비공개의 근거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B유형, 위원회에 비공개 판단의 권한을 위임한 C유형, 비밀의 범주를 특정하지 않은 채 비밀을 요하는 회의의 비공개를 허용하는 G유형 모두 자의적 비공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E유형의 ‘위원회단 공개 시 정보주체(소속 위원을 말한다)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 제4호)와 F유형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독소 조항으로 해석됨
- F유형의 비공개 근거를 명시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66개임. 분석 대상 기초자치단체 조례 중 35%에 달함

〈표 13〉 회의록 비공개 근거 유형

유형		규정
A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B	공익침해 우려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C	위원회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D	타법령 및 조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E	위원의 공개 거부	위원회단 공개 시 정보주체(소속 위원을 말한다)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F	위원장 필요인정 +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3분의2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G	위원회 특성상 심의내용 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특성상 심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위원 명단의 공개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H	해산된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위원회	
--	--------	--

5.2.5. 회의록 작성의 구성 요소

- 분석대상 조례 188개 중에서 작성되어야 할 회의록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또는 간략하게라도 언급한 조례는 111개(59%)임.
- 이들 조례에 나타난 회의록 구성 요소를 출현 빈도 기준으로 분석하면 상위 요소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이 도출됨
- 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회의록의 표준 구성 요소는 <표 14>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14> 회의록 표준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주요 내용 및 기록 기준
1 회의의 명칭	위원회, 자문기구, 심의회 등 공식 명칭을 명시
2 개최기관	주관 기관명(예: ○○시청, △△구청 등)
3 회의 일시 및 장소	개최 날짜, 시간, 장소(회의실명, 온라인 여부 포함)
4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위원장, 직위, 소속, 외부참석자 및 배석자 구분
5 회의 진행순서	개회, 안건 상정, 심의, 의결, 폐회 등 절차
6 심의(상정) 안건	안건명, 제안자, 관련 부서, 목적
7 발언 내용 또는 발언요지	주요 토론, 질의, 답변, 의견진술 내용 요약
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의결 결과, 친반 수, 결정 경위, 이의 유무
9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정한 기타 보고 기록 사항
10 회의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비공개 대상 여부

5.3. 위원 명단 공개

5.3.1. 현황

- 분석대상 188개 조례 중 위원 명단 공개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36개(19%)뿐임. 무려 151 개의 조례에 위원 명단 공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단, 1개 조례가 위원회 명단 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의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 조례 중 80%에 달하는 150 개 조례가 위원 명단의 공개을 언급조차하지 않는 것은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관행과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미 다수의 판례를 통해 위원 명단은 공개정보임을 확인받은 바, 현행 조례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함

5.3.2. 위원 명단 공개 방법

- 위원 명단 공개를 명시한 조례가 36개인데, 공개 방법을 명시한 조례는 34개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 명단의 공개 원칙을 제시할 뿐, 공개 방법 또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에 대한 군민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 명단을 사전 공표의 대상이 아닌, 정보공개 요구 또는 청구의 대상으로 둔 것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임
- 조례들은 대부분 정보통신망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다만,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보에 동시에 공개하도록 한 조례도 있음

〈표 15〉 위원 명단 공개 방법 유형

미규정	2
(정보)공개 요구	2
정보통신망	1
홈페이지	19
홈페이지, 공보	12
합계	36

5.3.3.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

- 위원 명단 공개를 명시한 조례가 36개가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
 -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명단 공개 시 정보주체(소속 위원을 말한다)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 가장 빈번히 등장한 비공개 사유는 위원 명단 공개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하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공정성” 침해를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회의, 회의록 비공개 사유와 동일하게 명단 공개의 비공개 사유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회의공개 관련 조례 분석: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17곳의 회의공개 관련 조례 목록은 다음과 같음. 경기도가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와 위원회 설치 조례를 각각 두고 있어, 총 분석 대상 조례는 18개임

〈표 16〉 광역자치단체 회의공개 관련 조례 목록

광역자치단체	회의공개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경기도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1. 회의 공개

6.1.1. 회의공개 원칙 명시 여부

- 분석 대상 18개 조례 중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한 조례가 13개(72%)로 기초자치단체 188개 조례 중 회의공개 원칙을 명시한 조례가 78%인 것에 비해 조금 낮은 비율임

6.1.2. 회의 방청 규정

- 방청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18개 조례 중 단 2개뿐임.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임
-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방청”하거나, “위원회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음

6.1.3. 회의 사전 고지 규정 분석

- 18개 조례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만이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 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나머지 17개 조례의 회의사전고지 규정은 모두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6.1.4. 회의 사전 고지 기간 분석

-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사전 고지 기간은 “최단 3일 전까지”부터 최장 “15일 전까지”임
- 이 중 “7일 전까지 고지 – 3일 전까지 회의자료 배부”가 가장 많음

〈표 17〉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사전 고지 기간

3일 전까지	1
5일 전까지 / 5일 전까지 고지 – 3일 전까지 회의자료 배부	2
7일 전까지	3
7일 전까지 고지 – 3일 전까지 회의자료 배부	10
15일 전까지	1
미지정	1
합계	18

6.1.5. 회의 사전 고지 예외 유형 및 규정 내용

-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 사전 고지 예외 유형은 크게 “긴급사유”, “시민이익침해”, “비밀회의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예외 유형의 문제점은 앞서 논한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와 동일함

〈표 18〉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 사전 고지 예외 유형

유형	규정
A 긴급사유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B 시민이익침해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시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C + 비밀회의내용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사유

6.2. 회의록 공개

6.2.1. 현황

-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외한 16개 조례가 회의록 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6.2.2. 회의록 공개 기간 분석

- 18개 조례 중 6개 조례가 회의록 공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공개기간 유형은 최단 7일 이내부터 최장 1개월(30일) 이내임

〈표 19〉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공개 기간 유형

회의공개 기간 유형	조례수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3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	3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 (1회 10일 기간 연장 가능)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	1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	2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	3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미지정	6
합계	18

6.2.3. 회의록 공개방법 유형 구분

-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공개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다수를 차지함
- 다만, 회의록의 공표가 아닌 의회의 요구 또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개하도록 한 조례도 있음

〈표 20〉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공개방법 유형

회의록 공개방법 유형	조례수
(시-도)의회 요구 / 청구	2
홈페이지	13
미지정	3
합계	18

6.2.4. 회의록 비공개 근거 유형

- 회의록의 비공개 근거 유형을 ‘정보공개법’, ‘타법/조례’,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위원회 결정’, ‘위원장 인정 및 재적위원 과반수’ 등의 5가지로 구분됨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로 “타법/조례”를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9곳(서울,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광주, 경북, 경남)으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는 정보공개법을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6곳(대구, 강원, 경기, 제주, 충남, 경북)임
- 한편,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판단으로 회의록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곳도 있음.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조례는 회의록 비공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표 21〉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비공개 근거 유형

	유형	규정	자치단체
A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대구, 강원, 경기, 제주*, 충남, 경북
B	타법령/조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서울,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광주, 경북, 경남
C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에 명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
D	위원회 결정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전남, 충남
E	위원장 인정 + 재원위원 과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 등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광주, 경기, 경북, 경남,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는 회의록 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명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제시하고 있음

6.2.5. 회의록 작성의 세부 내용

-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나타난 회의록 작성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회의록 공개 세부 내용

공개 세부 내용	조례수
회의결과 및 회의록	2
1. 위원명단 2. 회의록 3. 회의 결과서	1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명단 3. 회의록 4. 회의 결과서	1
회의결과	1
회의록	3
회의록, 회의결과 등	1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	6
미지정	3

6.3. 위원 명단 공개

6.3.1. 현황

- 18개 조례 중 위원 위원 명단 공개를 규정한 조례는 4개뿐임. 각 조례의 규정은 〈표 23〉과 같음

〈표 23〉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위원 명단 공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명단의 공개) 도지사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 명단의 공개) 도지사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과 도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자료의 공개) 위원회 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 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6.3.2. 위원 명단 공개 방법

- 위원 명단 방법은 홈페이지와 공보임

6.3.3.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

-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는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와 타 법령 준용임

7. 회의공개 조례(안)

- 본 연구가 제안하는 회의공개 조례(안)은 법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회의의 원칙, 회의의 공개, 위원 명단 공개, 회의록 공개 등을 포함한 10개 조항으로 구성됨
- 제1조에 규정된 조례 목적은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음
- 제2조를 통해 조례에 담긴 “위원회”와 “회의록”의 정의를 명시함
-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OOO(도/시/군/구)에 설치 ·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로 규정함
- 제4조에서 대면 회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서면회의의 남용 방지를 위해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제5조에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위원회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준용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함
- 제5조의2에 “회의의 고지 및 방청”을 규정함. 기존 조례의 회의 사전 고지 규정들이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표하게 함으로써 회의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음.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공표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함께 두었음
- 제5조의3에 제4조(회의의 원칙), 제5조(회의의 공개), 제5조의2(회의의 고지 및 방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의의 결정 및 의결 효력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어, 회의 공개 조례의 제도적 취지를 훼손하는 절차적 위반에 제재를 취하고자 함
- 제6조에 위원에 대한 회의 사전 고지 규정을 둠.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함. 회의 사전 고

지의 비공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로만 한정함

- 제7조에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 위원 명단의 비공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로만 한정함. 또한, 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원 촉의 경우, 변경된 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함
- 제8조에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을 예외로 함. 또한, 회의록에 담겨야 할 주요 사항을 8가지로 명시함
- 제9조에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회의록은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제8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도록 함
- 본 연구가 제시하는 회의공개 조례(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음

〈표 24〉 회의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OOO(도/시/군/구)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OOO(도민/시민/군민/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OOO(도/시/군/구)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합의체 기구 및 기관을 말한다.
2. 회의록이란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의 장소, 일시, 참석 위원 명단, 심의 안건,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OOO(도/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회의의 원칙)

- ①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 또는 화상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2. 서면심의 개최에 대해 위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절차·위원별 의견을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공개)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 제5조의2 1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에 비공개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회의의 고지 및 방청)

-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불가피

한 사유로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의3 (공개 의무 위반 시 회의 무효)

제4조(회의의 원칙), 제5조(회의의 공개), 제5조의2(회의의 고지 및 방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회의는 그 의결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회의 사전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 ①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촉의 경우, 변경된 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포함)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의 공개)

- ① 위원회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제8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도/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을 비공개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